



2024년도 치과의사전공의(인턴) 추가모집공고

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(치과의사전공의의 시험 및 선발)에 의거, 2024년도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의 치과의사전공의(인턴) 추가모집 및 전형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모집인원

구 분	정 원	비 고
인 턴	7명	

2. 응시자격

- ‘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’에 위배되지 않는 자로서 치과의사면허증을 소지하였거나 치과의사국가고시 합격자.
- 본원 인사규정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자

인사규정 제20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7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
8.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9.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
10.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
11. 기타 치과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
12. 채용비위에 의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13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4. 「형법」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- 아동·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에 해당되지 않는 자
- 군보 지원자의 경우 국방부의 '군전공의요원 관리방침'에 위배되지 않고, 33세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는 자

3. 전형일정

구 분	일 정	비 고
원서교부 및 접수	2024.02.06.(화) / 17:00	경남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2층 교육연구실
필기시험	치과의사 국가시험 성적으로 같음	
면접시험	2024.02.07.(수)	부산대학교치과병원
합격자발표	2024.02.08.(목)	홈페이지 공고

※ 지원자 전체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필수 응시

4. 제출서류

구 분	제출서류
인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공의 지원서(본원 양식) 1부 - 자기소개서(본원 양식) 1부 - 졸업(예정)증명서 1부 -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(석차, 평점 필히 기재) -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 1부 (취득예정자는 추후제출) - 치과의사국시 전환성적 발급 위임장 1부 -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-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-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부

※ 본 채용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하며, 제출서류는 지원자의 응시자격 확인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,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
5. 선발기준

가. 서류전형 : 자격적격여부

나. 면접전형

구 분 (비율)	인 턴
성 적 (30%)	치과대학 성적 (전학년)
필기시험 (50%)	치과의사 국가시험 성적
면접시험 (20%)	본원에서 진행하는 면접시험 성적

※ 면접시험 점수 평균점이 10점 미만일 경우 정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음.

6.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본원 교육연구실(☎055-360-540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24. 2. 5.

부산대학교 치과병원장

